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제한

이성남 |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검사역

1. 머리말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보험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소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계약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지속되는 계속적 계약관계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단 성립한 보험계약은 그 생명에 계속되며, 이러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를 하여야 한다.

우리 상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상법 제649조), 이에 반해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이라도 임의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해지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험료 지급지체에 의한 해지(상법 제650조 제2항), 계약전 알릴 의무의 위반에 의한 해지(상법 제651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위반에 의한 해지(상

법 제652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다음에 제시된 사례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된 사례로, 본 사례를 통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례

경기도 화성에 사는 甲은 목조건물 1동 및 벽돌조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었다. 2000. 1. 12 甲은 乙 보험사의 모집인 丙을 통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조건물에는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벽돌조 건물은 식당 1개동, 창고건물 1개동이였다. 모집인 丙은 甲으로부터 기계설비의 명세서를 제출받아 자신이 직접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계설비가 수용되어 있는 건물의 위치와 구조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기계설비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청약서와 보험증권에 보험의 목적인 위 기계설비가 벽돌조 건물 내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후 2000. 10. 20. 22:00경 화재가 발생하여 목조건물 일부와 그 안에 수용된 기계류 등의 일부가 손상되었다. 甲은 위 건 화재사고로 乙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乙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건물 구조와 위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甲과 乙보험사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3. 문제의 제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렸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법 제651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상법 제655조) 그런데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 보험자가 약의 이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위 사례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동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 보험자의 약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이 문제된다.

4.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 계약의 해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가. 주관적 요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되려면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상법 제651조 본문) 여기서 고의란 보험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중요한 사실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알린 사항이 부실임을 알고 있음을 가리키며 반드시 자기 등과 같은 적극적 기망의사를 요하지 않는다.¹⁾

예컨대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 모집인의 권유에 따라 심장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보험의(保險醫)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²⁾, 또는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질문표에 부실 또는 불완전한 기재로 하게 한 때도 고의가 인정된다.³⁾

중대한 과실이란 보험계약자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제대로 알릴 수 있었을 것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것을 뜻한다. 가령 질문표에 의하여 알리는 경우 그 기재사항을 한번만 훑어보았으면 잘못 고지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알지 못한 때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⁴⁾

나. 객관적 요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객관적 요건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불고지라 함은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알리지 아니하는 것, 즉 묵비를 말하고, 부실고지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 즉 거짓진술을 말한다.⁵⁾

다. 입증책임

보험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전제조건인 사실이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5. 해지권의 제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있으면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고⁶⁾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도달한 시점에 발생한다. 한편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은 다음의 경우 제한되고 있다.

가. 보험자의 악의·중과실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단서) 여기서 보험자는 보험자 자신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 보험의(保險醫)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를 뜻한다. 원래 계약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배하고 있는 위험을 보험자에게 알림으로써 그 위험인수에 있어 이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보험자의 중과실을 인정한 예로는 피보험자가 중풍을 알고 있을 때 보험자가 생존 조사시에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⁷⁾ 대담이 오류임이 청약서 문면상 명백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나. 제척기간의 경과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

사고의 발생 전후를 묻지 않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기간의 제한이 따른다. 즉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보험자는 이를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 내에 그 사실을 주장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해지권이 소멸되므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기간의 성격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실무상 생명보험약관 등에서는 상법상의 기간보다 단축하여 2년(진단계약의 경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인과관계의 부존재

상법 제655조 단서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그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해지권 제한사유로 새기고 있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사건으로는 상법 제655조를 해지권 제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사고의 전후를 구별하여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고 후에도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되, 보험사고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 제655조에 근거하여 보험사고 후에는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새기는 것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량한 보험계약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동질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보험계약의 단체성에도 반하는 것이다.

라. 판례상의 제한

우리 대법원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⁸⁾. 동 판례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보험가입자 측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보험의 선의성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⁹⁾


6. 사안의 해결

건물에 수용된 기계설비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계설비를 수용하고 있는 건물의 구조가 목조인지 또는 벽돌조인지 여부는 화재 발생 및 확산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상법 제651조 본문이 정하는 계약전 알릴 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견상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현출된 청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기계설비가 벽돌조에 수용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651조 단서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례에서 보험자가 모집인을 통해 제

출받은 청약서를 그대로 믿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보험계약을 승낙한 경우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여부가 문제된다.

甲과 건물에 수용되어 있는 기계류 등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로서는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손쉽게 건물의 위치·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목적물이 산재하는 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고자 하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서만을 그대로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권이 제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주)

- 1) 김성태, 보험법 강론, 223면
- 2) 분쟁조정사례 78-7(1978.5.22) 양지보험분쟁
- 3) 김성태, 보험법강론, 224면
- 4) 양승규, 보험법(제3판), 122면
- 5) 양승규, 보험법, 122면
- 6) 대법원, 87다카2973 판결, 1989.2.14 선고
- 7) 조정례 78-43(1978.2.22) 양지보험분쟁
- 8) 대법원 97다47255 판결, 1998.4.10 선고
- 9) 김성태, 보험법강론, 234면